

## ●환경부공고제2020-693호

「부당한 환경성 표시·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11일

환경부장관

부당한 환경성 표시·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# 1. 제정 이유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6제4항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·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, 방법, 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신고포상금 신고인 및 신고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(안 제2조, 제3조)
- 나.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(안 제4조, 제5조)
- 다. 신고포상금 지급금액·결정 및 지급시기·방법 등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)
- 라.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, 심의사항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### 3. 제출의견

「부당한 환경성 표시·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」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. 9. 3.(목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환경산업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omelo@korea.kr
- 2) 주소 : (우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
- 3) 팩스 : 044-201-6700
- 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op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(전화 : 044-201-670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([www.me.go.kr](http://www.me.go.kr)) “입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●고용노동부공고제2020-324호

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11일

고용노동부장관